



제418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 포함〉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49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용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12.
3. 회 부 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사기죄의 경우 특정사기범죄로 해당 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 내에 빠져 있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는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강탈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이기 때문이며, 특히 최대 피해자가 20·30 청년세대와 취약 계층이라는 점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색출해야만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도 몰수·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를 포함하려는 것임(최기상의원안 제2조제3호가목).

현행	최기상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가. ----- ----- ----- ----- ----- ----- -----

현행	최기상의원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나. (생략) 4. 5. (생략)	----- ----- <u>유사수신행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u>----- ----- ----- ----- ----- ----- ----- ----- ----- ----- ----- ----- ----- ----- ----- 나. (현행과 같음) 4. 5.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몰수·추징·환수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부패범죄’를 별표에 규정하고, 부패범죄 중 ‘특정사기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행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면서, 국가가 직접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형법」 상 몰수는 몰수 대상의 소유권을 국가에 강제로 귀속시키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 행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¹⁾,

- 현행법이 일부 부패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몰수·추징의 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피해자가 사법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범죄피해자에게의 환부를 전제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부패범죄로서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인 현행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특정사기범죄는 「형법」 상 사기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하는 죄(상습범 포함) 중²⁾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에 관한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³⁾로 한정됨.

- 이에 따르면, 「형법」 제114조⁴⁾에 따른 범죄단체⁵⁾를 조직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특정사기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건축주와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전세사기⁶⁾를 실행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범죄피해재산은 현행법상 특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밖에 범죄단체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 집단⁷⁾이나 개인에 의한 다수의 전세사기의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

-
- 2)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 4)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5)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 6) 경찰은 ①무자본·갭투자(건축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무자본 매입후 임대차계약으로 보증금 편취), ②‘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보증금 반환능력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③부동산 권리관계(저당권 설정, 압류 등 우선순위 권리) 허위 고지, ④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위임범위 초과 계약(권리자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은 후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 편취), ⑥허위보증·보험(보증보험 등 받을 수 없는 건축물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편취), ⑦불법 중개·매매(개설 등록 없는 중개업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함(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보도자료, 2022.7.25.)
 - 7)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제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는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배상청구소송 등 사법상 청구권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하여야 함.

□ 개정안은 특정사기범죄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도 몰수·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재산에 몰수·추징의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어떤 범죄행위를 ‘특정사기범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환수 등에 관하여 형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사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이 법 및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⁹⁾의 취지,¹⁰⁾ 범죄행위의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세사기피해자

나.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인도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협약은 다양한 부패형태를 범죄화하고, 부패사범에 대한 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 및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체도를 구축하며, 부패수익 자산을 몰수하여 본국에 반환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각국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2007. 11. 참조).

10) 협약에서는 어떤 범죄를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당사국이 최대범위의 전제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 은닉·가장 등에 대처할

반사회성 정도, 국제협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은 현행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전세권 등기)나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및 최우선변제권 규정이나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나,
 - 전세사기가 대규모 조직적으로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 등의 재산·소득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임대인 등이 범죄수익을 소비·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몰수·추징의 특례가 인정될 경우 수사과정에서 자금추적 등 강제수사 수단을 활용한 몰수·보전¹¹⁾으로 범죄수익 관련 자산을 동결함으로써 추후 확정판결을 통한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 또한, 다수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는 불법의 정도가

것과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전제범죄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음(협약 제23조 참조).

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몰수보전명령)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함으로써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34조(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① 검사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 ⑤ (생략)

심하여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법이 부패범죄 중에서도 제한된 범죄행위만을 범죄피해 재산의 전제범죄로 삼는 것은 민사·형사를 구분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의 영역이고, 이를 확대하는 것은 피해재산 환수를 위한 고소·고발의 남용, 민사사건의 형사화, 현행 몰수법체계와의 충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임.

□ 다만,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기범죄에 추가되는 범죄의 근거 법률 및 부칙 적용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특정사기범죄에 추가되는 전세사기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발생한 사기죄로 하고 있는데, 동법은 시행(2023. 7. 2.)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적 특별법¹²⁾이어서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법률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부칙 적용례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9425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23조 및 제24조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 시행 전 전세사기도 특정사기범죄로 보아 그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 몰수·추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상 몰수는 다른 주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형벌이므로 개정안 부칙 적용례는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유사수신행위 등을 이용한 사기를 특정사기범죄로 규정하여 부패범죄에 포함하였던 동법¹³⁾ 개정시에는 개정안 부칙 제2조와 동일한 적용례를 규정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73

13) 법률 제16444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9. 8. 20., 2019. 8.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범죄"라 한다)로 한정한다]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나.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9조의 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부칙

제2조(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별표 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